行政區域變更에對한意見要求案
審 査 報 告 書

1994年 10月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査 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4年 10月 8日

나. 提 出 者 : 光州直轄市 西區 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4年 10月 11日

라. 上程日字 : 1994年 10月 18日

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4年 10月 18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課長 曺秉畯)

가. 提案 事由

○ 서구 분구가 현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경계가 획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중 갑 지역에 해당된 행정운영동 화정2동에 법정동 주월동 일부가 포함되고 있어 분구시 주월동이 양구간에 상존되어 혼란이 초래되므로

○ 분구전 화정2동 관할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 변경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

나. 主要骨子

○ 화정2동 관할 법정동 주월동 661필지 375,921.5㎡ (113,716평)을 법정동을 화정동으로 변경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: 趙澤龍)

○ 종전의 경계대로 분구시 기존구와 신설구에 주월동이 상존하게 되면 행정상의 불편과 민원인의 혼선이 초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본안과 같이 법정동 명칭변경을 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없음

6. 審査 結果 : 의견서 채택

의 견 서

○ 화정2동 관할 주월동 행정구역(법정동)변경 요구건에 대하여는

○ 서구 분구시 현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간의 경계가 획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분구시 양구간에 법정동인 주월동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상의 불편과 주민의 혼란이 초래되므로

○ 분구전 화정2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.

1 9 9 4. 1 0.

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장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